

국민취업지원제도

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
취업지원 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



01

참여 기업 신청대상

신청대상

- 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(신청직전 월말 기준)
- ☑ 중소·중견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및 NGO·공공기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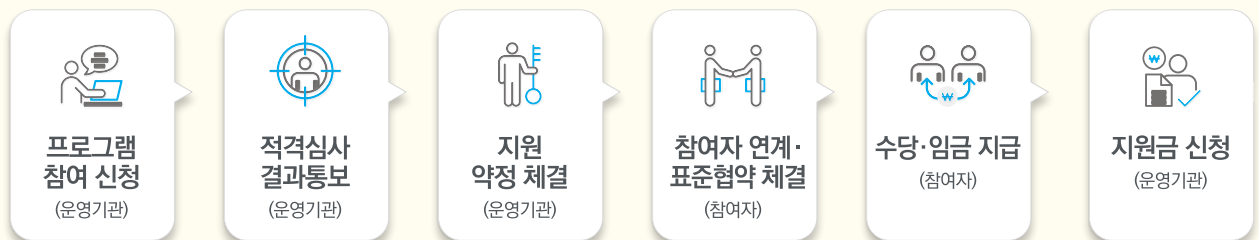
참여제한 사유



- ☑ 소비·향락업 등(부동산, 유흥, 노래연습장, 비디오, 복권, 기타 gambling·베팅업 등)
- ☑ 인력공급업·파견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업
- ☑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발생기업
- ☑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및 중대한 사회문제 야기한 기업 등
- ☑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 이력있는 사업주(인턴형)

02

참여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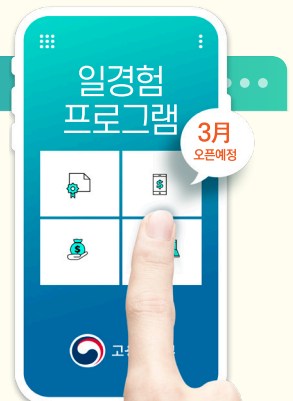
03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3월 중 오픈예정*)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가능

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접속 ▶ www.work.go.kr/kua

워크넷 기업회원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>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관리 > 참여기업신청



일경험 프로그램은

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·직무향상을 지원하여
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

04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수준

	체험형(직무 체험)	인턴형(직무 수행)
참여자 지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4대보험 가입)
지원기간(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30일(사업장 휴무일 제외) 1일 4시간(1주 20시간) 이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3개월 1주 30~40시간 내 협의하되,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은 준수
직무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 기초적 사무 보조, 사회서비스 보조 등 위험·유해한 업무는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무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직무 수행 단순·반복적인 직무 등은 제외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식비·교통비 등 실비(1일 2.1만원) 1인당 멘토링 수당(1인당 1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 인건비 최대 월 1,822,480원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※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 지급
모집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기준 40% 이내 모집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기준 20% 이내 모집 가능



05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

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	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
서울 전지역	(주)한국직업개발원, (사)국제경영원	070-4373-5013	광주·전북 전남·제주	(사)광주경영자총협회	062-654-3426
인천·경기북부 강원 철원군	(주)지에스씨넷 파주지점	032-426-1949	대전·세종 충북·충남	(사)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	070-4066-4433
경기 남부	케이잡스(주) 부천시사	032-351-8852	대구·경북	(주)지에스씨넷 구미지점	1811-7629
부산·경남	퍼스트인잡(주)	051-714-2480	강원권 (철원제외)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(춘천)	033-256-8816
울산·창원	케이잡스(주) 창원지사	052-294-9865			